

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

'19년부터 달라지는 내용

▶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

종 전

변 경

4·7·10·2월
말일까지

4·7·10·**1월**
10일까지

▶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상향

종 전

변 경

1일 10만원

1일 **15만원**



근로소득·사업소득을
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
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세요!

국민의 세율을 위한 정부적인
보다 나은 국세청

2019년 신설

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

1월 ~ 6월 근무분 → 7월 10일까지
7월~12월 근무분 → 1월 10일까지



국세상담센터
126

국세상담이 필요할 땐 국번없이 126

국세청
National Tax Service

간이지급명세서란?

2019년부터 근로소득 ·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(소득세법 §164의3)

제출의무자

- ▶ **근로소득(일용근로소득 제외),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**
 - ①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
 -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

적용시기

- ▶ '19.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

제출내용

- ▶ 소득자의 인적사항, 근무기간, 급여액 등
- ▶ 원천징수세액 제외

제출기한

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

• 1월 ~ 6월 근무분 → 7월 10일까지

• 7월 ~ 12월 근무분 → 1월 10일까지

▶ 휴업 · 폐업 · 해산한 경우 : 휴업, 폐업,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

제출방법

- ①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이용한 제출
- ② 휴대용 저장장치(USB 등)에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
- ③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
 - ▶ 개인사업자로서 직전년도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20매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경우

가산세 (법인세법§75의7①, 소득세법 §81①)

- ①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× 0.5%
- ②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금액 × 0.5%

다만, '19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가산세의 50% 감면

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Q & A

Q

간이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하나요?

A

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

Q

소득자가 장려금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?

A

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

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부터 제출하나요?

A

2019년 1월분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상반기분(1월 ~ 6월분)은 7월 10일까지
하반기분(7월~12월분)은 1월 10일까지

Q

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?

A

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, 연말정산 지급 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Q

일용근로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가요?

A

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닙니다.

Q

이미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오류가 확인되면 어떻게 하나요?

A

오류내용을 수정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.

